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단도박모임(Korea Gamblers Anonymous : GA)이라고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국은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역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국제단도박모임의 운영지침과 내규를 준수하며, GA의 창립정신에 따라 도박중독자 및 그 가족들에게 상담, 회합, 후원 등을 통하여 도박문제를 극복하고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경험과 힘과 희망을 나누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사업을 수행한다.

1. 회복프로그램과 일치프로그램 준수
2. 도박중독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3. 도박중독의 심각성 홍보
4. 본회의 회원 및 가족의 지속적인 회합
5. 본회의 회원 및 가족, 관련자들에 대한 연수
6. 도박 재발방지 프로그램의 개발
7. 도박관련자들에 대한 강의
8. 기타 도박중독자들의 발생 방지와 재발방지에 관련된 업무

제5조(선언) 본회는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회복프로그램과 일치프로그램을 준수한다.
2. 본회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 어떤 기관이나 외부기업 등에 본회의 이름으로 보증을 서주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
3. 본회는 외부의 기부금을 사양하며, 전적으로 자립한다.
4. 본회는 영구히 비영리적이고 비직업적이어야 한다.
5. 본회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도박관련 산업과는 제휴하지 않는다.
6. 본회는 외부의 문제에 대하여 견해를 갖지 않으며, 대중적인 논쟁에 참여하지 않는다.

제 2 장 운영

제6조(임원 및 운영위원)

1. 본회는 임원 및 운영위원을 둔다.
2. 본회는 임원 및 운영위원의 봉사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지 않는다.
3. 임원 및 운영위원의 명칭, 직무, 임기, 자격 등의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제7조(총회의 구성)

1. 본회의 최종 의결기관으로서 본회의 협심자들로 구성한다.
2. 본회는 연 1회의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3. 총회와 관련된 제반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회의)

1. 본회의 회의는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개최 가능하며 회의의 명칭, 시기 등의 제반 사항은 운영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제9조(사무요원)

1. 본회는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국장 및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의 운영, 업무, 사무국장의 자격, 임기 등 사무국 및 사무국장에 관한 필요한 제반사항은 운영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제10조(이익금의 분배) 본회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회원(이하 '협심자'라 한다.)들의 자발적인 후원금 등 결산으로 인한 잉여금은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협심자들에게 절대로 배분할 수 없음은 물론, 중도 탈퇴하는 경우에도 기납부한 후원금 등을 반환하지 않는다.

제11조(단체해산의 발의) 본회의 해산은 발의일 기준 재적 협심자 과반수의 동의나 각 그룹 대표자 2/3 이상 또는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2/3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제12조(단체해산의 결의) 본회의 해산은 해산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일 전월 말일 기준 재적 협심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협심자 2/3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결의한다.

제13조(단체 해산의 신고 등) 본회 총회에서 본회의 해산이 결의되었을 경우, 결의 당시 봉사자들이 해산신고 등의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단체해산시 잔여재산의 처리) 본회의 해산 결의 시 잔여재산은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기증한다.

제15조(정관의 개정)

1. 본회의 정관에 대한 개정은 각 그룹의 선거권을 갖고 있는 협심자 30명 이상의 동의, 또는 운영위원회에 의하여 발의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본회 재적 협심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 협심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